중구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

전기차 관련 주차장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화재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1. 추진 배경

□ 충전중이거나 충전 후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

□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기준, 충전시설의 설치규모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화재를 비롯한 안전 관련 기준이 없어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점 발생

2. 설치 기준

□ 적용대상 :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중 신·증축 건축물

-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(아파트),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일반 건축물 및 공공 건축물

□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(충전시설 포함) 설치

- 원칙 : 지상층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층 설치
  ※ 지하주차장 설치 시 방화구획 권장, 피난계단 인접 설치 지양
- 예외 : 대규모 정비사업 등은 관련 심의(평가)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(부서)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
  전기차 전용 주차대수를 다수 확보해야하는 경우 피난층과 가까운 층부터 설치

□ 화재 대비 전용 소화설비 설치

- 소화용 차수판(높이 600mm 이상, 조립형 수화수조 형태) 및 급수설비
- 전기차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내판 부착